<신구대비표>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규정 개정(안)

개정 전	개정 후	비고
제 10 조(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의 권한) ①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 1. ~ 6. (생략)	**제 10 조(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의 권한)** ①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 1. ~ 6. (현행과 동일)	
<신 설>	7. 이 기준 및 법 제 32 조제 3 항에 따른 금융소비자보호기준의 적정성·준수실태에 대한 점검·조치 8. 법 제 32 조제 2 항에 따른 평가(이하 "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"라 한다), 감독(법 제 48 조제 1 항에 따른 "감독"을 말한다) 및 검사(법 제 50 조에 따른 "검사"를 말한다) 결과의 후속조치 관리 9. ~11 (현행 7.~9.와 동일) ⑤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은 제7조제4항에 따라 보고하는 의제에 관한 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·평가하고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.	총괄기관 역할 강화(감독규정 [별표2]3.나.1) 바, 사 개정사항 반영) 감독규정[별표 2]3.가.3) 개정사항 반영
제35조(성과보상체계의 평가 및 논의) ② 성과보상체계를 설정하는 부서는 매년 금융상품 판매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에 대한 성과보상체계를 수립하기 전에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의 의견을 확인하여야 한다. ③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은 제2항에 따른 의견 확인 시 금융소비자보호 관점에서 판매 관련 임직원등에게 적용되는 평가 및 보상 구조가 적절히 설계되어 있는지 여부 등을 검토하여야 하며, 검토결과를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	**제35조(성과보상체계의 평가 및 논의)** ② 성과보상체계를 설정하는 부서는 매년 금융상품 판매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에 대한 성과보상체계를 수립하는 경우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과 사전에 합의하여야 한다. ③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은 제 2 항에 따른 사전 합의 시 금융소비자보호 관점에서 판매 관련 임직원등에게 적용되는 평가 및 보상 구조가 적절히 설계되어 있는지 여부 등을 검토하여야 하며, 필요시 성과평가지표(KPI) 조정 등을 포함한 성과보상체계의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. 이 경우, 성과보상체계를 설정하는 부서는 거부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.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은 검토결과를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	성과보상체계 사전합의 등 명시(감독규정 [별표2]3.마.2) 개정사항 반영) 개선 요구(감독규정 [별표2]3.마.2) 개정사항 반영)
<신설>	**부 칙(2025.12.29)** 이 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	